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가단11960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4. 11. 27.

판결 선고 2024. 12. 11.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51,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16150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15. "소외 주식회사 C은 2021. 5. 31.까지 원고에게 62,051,580원을 지급한다. 소외 주식회사 C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사항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2021. 5. 5.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1. 9. 28. "판결문에 의한 톱날대금 상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위 가.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62,051,580원 채권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C이 위 금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상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부산회생법원 2022하면908, 2022하단908로 면책 및 파산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11.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3. 9.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보증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1) 피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신고한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의 총 채무액은 1,314,679,782원(원금 1,280,805,34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3,874,441원)에 달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증 채권 62,051,580원이 추가되었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가 면책 및 파산을 신청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할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2)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 채권을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원고의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만약 피고가 이 사건 보증 채권의 존재에 대해 알았다면, 채권자목록에 당연히 기재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 채무는 "판결문에 의한 톱날대금 상환계약서"에 근거한 것인데, 위 계약서의 작성일이 2021. 9. 28.인 점, 이 사건 보증 채무는 소외 주식회사 C이 원고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인 점, 달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 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 채권의 이행을 청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증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주영